

신용거래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 설명서와 함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는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신용거래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는 고객님의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용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용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 <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서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 (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만기)일 전이라도 필요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 **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신용용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 합니다. (신용거래설명서 신용거래상환기간 확인)
다만,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최초 90일 이며, 연장이 불가 합니다.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 투자위험등급 중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구분	고객투자성향	유의사항
1 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2 등급 (높은위험)	적극투자형	-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4 등급 (보통위험)	위험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 등급 (낮은위험)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88-0365) 및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영업추진부 (대표번호 1588-0365)

▣ 투자자 유의사항

※ 고령투자자(65세이상) 및 투자경험이 적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신용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더 큰 위험을 내재

·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과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 발생 가능**

·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가능하므로, 신용융자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유 주식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예: 140%) 등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이 처분될 수 있음

○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의 **투자 경험, 투자 위험,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종목, 방식 및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예시>

1.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신용만기일이 지나면 익일에 무조건 용자금을 상환시키며 예수금부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미수반대매매 처리됨

※ 임의처분 시 적용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로 적용됨

※ 당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산식 : 미수금 / 해당종목 하한가 (※매매에 따른 제비용 별도 고려)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는 별도 고려 필요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만기일	12,000원	12,000,000원	200%
D+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용자금 600만원 자동현금상환으로 미수금 6,000,000원 발생, 용자주식A주식 1,000주가 현금주식으로 변경 ▶ 미수금 6,000,000원 / 8,400원 = 715주가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매도가격 = 12,000(전일종가) x -30%(하한가) 		

2. 담보외 추가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담보부족의 경우) :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 전액 상환 처리되며, 반대매매 수량은 종합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text{담보유지비율} = \frac{[\text{기준가격} * (\text{보유수량} - X)] + \text{부담보평가금액}}{[\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 X)]}$$

$$\text{반대매매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종가}) * \text{보유수량} - \text{부담보평가금액}}{(\text{매도가격} *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종가})}$$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 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 적용)

※ A/B/C종목 : -15% D/E/Z종목 : -20% 적용됨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 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자금은 별도 고려 필요

▶ 반대매매 시 한국거래소에서 장개시 동시호가에 처분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용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0,000원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1일	8,500원	8,700,000원	145%	
D일 장종료	8,000원	8,200,000원	136%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8,100원	8,300,000원	138%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D+2일 (반대매매일)	매도가격 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으로 산정한 임의 처분 수량 : 65주 = $\frac{(6,000,000 * 1.4) - 8,100원 * 1,000주 - 200,000원}{(6,890원 * 1.4) - 8,100원}$			
	매도가격 8,1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원)으로 산정한 임의 처분 수량 : 103주 = $\frac{(6,000,000 * 1.4) - 8,100원 * 1,000주 - 200,000원}{(6,480원 * 1.4) - 8,100원}$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으로 종목등급별 차등 적용됨.

A/B/C종목 : 전일종가 * -15%, D/E/Z종목 : 전일종가 * -20% 적용됨.

● 임의처분수량 103주 6,48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 처분금액은 약 67만원(103*6,480원)으로 담보부족금액(10만원)의 6.7배수준, 투자원금(103*4,000원)412,000원 대비 -362,560원 손실(88%) 기록됨.

● 임의처분수량을 산정 시 매도가격 (-15% or -20%)으로 산정되었으나 임의처분수량이 하한가(-30%)로 체결될 경우 담보부족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일 증가로 담보부족 산정 시 담보부족으로 재 산정될 수 있음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고객

1)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용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 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2) 신용거래 가능 고객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 신용거래 가능 고객은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거래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 제한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 채무불이행자, 신용점수 당사기준 미달계좌
- 투자자정보 "정보미제공"고객
- 사고등록계좌, 가압류, 질권설정계좌
- CMA MMF 계좌
- 신용 및 대출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 미동의 계좌
- 최초 대주 거래(매도주문)전 사전교육 & 모의거래 의무 이수 후 이수정보 등록 필요
-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범위가 원화+거래통화, [해외주문]전체통화, [국내/해외주문]전체통화 계좌 (해외주식거래통화 선택 시에만 신용거래 등록가능)
- 그 밖에 회사가 신용거래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휴대폰 번호 미등록 시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 담보부족 등의 안내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통보가 되오니 휴대폰번호 변경, SMS수신거부, 스팸번호 등록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SMS 발송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됩니다.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환경 등에 따라 메시지 실패(통상 5%의 실패율 발생)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지연 도착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불가에 따른 원인은 통신망의 문제나 단말기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사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계좌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메시지 수신 불가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 대상 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	---------------------------------------------------------------

*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 가능 종목은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확인 및 고객센터(02-1588-0365) 혹은 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 위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2)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연장불가 종목(만기 연장 시)**

*기타 회사가 정한 연장불가 종목의 예 : 위탁증거금 100%지정 종목, 액면가 미달, 시총 및 60일 평균가격 당사 기준 미만 종목, 유동성 부족, 단기급등, 주식거래량 감소, 신용한도 초과, 매매정지, 정리매매, 상장폐지 예정종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신용공여 관리지침에 의거한 모니터링 종목 등

3) **신용으로 매입한 종목은 연장조건 충족 시 가능하나 연장 신청 전 당사가 정한 *연장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상환 하거나, 매도 청산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다. 신용거래 보증금률

1) 신용거래 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거래 보증금률

구분	보증금률	용자비율
현금징수형	A,B 그룹 : 총액 45%(현금 45%)	55%
	C,D 그룹 : 총액 50%(현금 50%)	50%
혼합징수형	A,B 그룹 : 총액 45%(현금 22.5%)	77.5%
	C,D 그룹 : 총액 50%(현금 25%)	75%
대용징수형	A,B,C,D 그룹 : 총액 6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 사용 가능)	100%
신용대주매도	총액 100%(미수계좌 주문 불가)	0%

2) 고객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혼합징수형] 또는 [대용징수형]의 경우 주문 시 대용 또는 대용을 갈음하여 납입된 현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담보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용자금 상환 외 출금, 출고불가 / 대출불가 / 신규주문이 불가능 합니다.

신용담보금의 대용으로 징구된 대용 종목을 매도 시 재매매 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도 결제 시

매도대금은 현금 담보금으로 대체됩니다.

4) 현금보증금의 경우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하지만, 대응보증금의 경우는 대응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용자한도

신용/대주거래의 한도는 고객 신용점수와 연동하여 결정되며, 고객 신용점수 변동 시 신용/대주거래 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신용대주거래는 종목 그룹별 매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고객 신용점수에 따른 한도가 종목 그룹별 신용/대주 한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대주의 경우 성숙투자자의 한도이며, 초기투자자와 경험투자자의 경우 정해진 한도로 적용됩니다. 신용점수별, 그룹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점수별 및 그룹별 신용/대주한도>

신용점수	신용/대주한도	비고
700점 이상	20억	대주의 경우 성숙투자자만 해당되는 한도이며, 초기투자자, 경험투자자의 경우 별도 한도 사용
650점 이상~ 699점 이하	10억	
649점 이하	불가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이하~
신용/대주한도	20억	20억	15억	3억	불가

☞ 고객 신용점수 한도와 종목 그룹별 한도 중 낮은 한도로 적용됨.

☞ 대주 초기투자자 3,000만원. 경험투자자 7,000만원.

마. 담보유지비율

1)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용자액 신용거래대주 종가기준 상당액의 140%(해외증권담보 신청 시 170%, 대주만 거래 시 120%,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거래 시 105%)이며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 납입을 요구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담보유지비율	일반매매계좌 대주만 거래 시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	해외주식 담보유지비율
105%	120%	140%	170%

●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신용공여 상품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상향 적용합니다.**

<예시> 대주 100만원(120%), 해외주식담보대출 100만원(170%) 보유 계좌의 담보유지비율

☞ [대주 100만원 + 해외주식 100만원] x 170%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2)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휴대폰 SMS(문자메세지), 이메일,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신용거래용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 합니다.

4)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5) 회사는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불가능한 해외주식의 매매에 따라 담보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점 잔고는 담보제공 불가로 신용공여 계좌인 경우 소수점 매수로 인해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1)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산정시점(국내 매 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담보 제공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은 담보부족 발생일입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계좌담보유지비율	담보부족 발생일
140%	128%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기 간 : 2018.11.04 (월)
- ▶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 2018.11.05 (화)

사. 이자율 및 징수일 등

1) 이자율 적용기준

신용 이자율은 당사홈페이지 <https://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대출/신용 > 신용용자/신용대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신용용자 이자율은 신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적용방식은 소급법을 사용합니다.**

- 소급법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 산식 : (신용거래용자금 X 신용기간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365) - 기징수이자
 - ※ 이자계산기간은 일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적용, 경과일수는 한편넣기
 - ※ 신용이자는 원미만 절사

- 고객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은 없음
- 용자이자 및 대주이자 징수시기
 - <정기>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용자이자 및 대주이자 징수
 - <상환>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 용자이자 및 대주이자 징수

(신용거래용자이자 계산 예시: 용자금 10,000,000원, 용자기간 35일(12.13~01.17))

(2025.05.12일 시행일 대면금리 기준으로 작성됨)

계산법	징구일	용자이자	총이자
소급법	정기이자 01.02	$10,000,000 \times 8.6\% \times 18/365 = 42,410$	89,178원
	상환이자 01.17	$(10,000,000 \times 9.3\% \times 35/365) - 42,410 = 46,768$	
체차법	정기이자 01.02	$10,000,000 \times 4.9\% \times 7/365 = 9,397$	74,792원
		$10,000,000 \times 7.9\% \times 8/365 = 17,315$	
		$10,000,000 \times 8.6\% \times 3/365 = 7,068$	
	상환이자 01.17	$10,000,000 \times 8.6\% \times 12/365 = 28,273$	
		$10,000,000 \times 9.3\% \times 5/365 = 12,739$	

※ 신용이자율이 대면계좌 금리기준 ~7일: 4.9%, ~15일: 7.7%, ~30일: 8.6%, ~60일: 9.3%, ~90일: 9.3%, 91일~: 9.3%이나, 용자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 단의 4.9%, 7.7%, 8.6%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9.3%만이 일괄 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4.9%, 15일까지는 7.7%, 30일까지는 8.6%, 60일까지는 9.3%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해당 예시 이자율은 시행일 기준 이자율에 따라 변동됨

2) 기준금리 : CD수익률

※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이자 징수일

- ☑ 신용용자 : 정기징수 - 매월 첫영업일, 수시징수 - 상환시(현금,매도상환시)
- ☑ 신용대주 : 정기징수 - 매월 첫영업일, 수시징수 - 상환시(현물,매수상환시)

4) 이자율 적용방식 : ☑ 신용용자 : [소급법]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소급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용자) 거래보증금률	(현금징수형) A,B그룹 : 총액 45%(현금 45%) C,D그룹 : 총액 50%(현금 50%) (혼합징수형) A,B그룹 : 총액 45%(현금 22.5%) C,D그룹 : 총액 50%(현금 25%) (대용징수형) A,B,C,D 그룹 : 총액 6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 가능)	신용거래 상환기간	-유통, 자기용자: 최초 120일, 연 장조건 충족 시 60일씩 연장가능 (최장기간 제한 없음) -유통대주: 최초 90 일, 연장조건 충족 시 90 일씩 연장가능 (최대 3 회 연장가능. 단,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360 일로 제한) ※ 대주 만기 연장 신청은 만기 D-4영업일부터 D-2영업일 08:20~18:00 까지 가능
(대주) 거래보증금률	총액 100% (미수계좌 주문 불가)	신용거래용자 이자적용방식	소급법 : ①참조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	매월 첫 영업일	신용용자, 유통대주이자 징수일	-정기 징수 : 매월 첫 영업일 -수시 징수 : 상환일
담보유지비용	140% (해외증권담보신청시 170%, 대주만 사용 시 120%)	임의상환처리	추가담보요구일+2영업일 (담보부족 발생일+2영업일)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당사의 신용이자율은 당사홈페이지 <https://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대출/신용 > 신용용자/신용대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용공여금리산정 체계

신용공여 금리산정 체계 예시

[신용용자]

분류	소항목	산정근거
	대출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CD 금리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조달금리 - 대출기준금리
	유동성프리미엄	당사 미고려
	신용프리미엄	당사 미고려
	자본비용	당사 미고려
	업무원가	주요 지점 샘플링 설문을 통한 원가 산정(년1회)
	목표이익률	국내 4대 은행 평균 NIM(순이자마진)
	가감조정 전결금리	최종 금리 산정

- 당사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 2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합니다.
- CD 수익률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 회사는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 유지합니다.

② 유통대주 이자는 유통대주 상환 시 매매내역에 개별 거래내역으로 생성(대주수수료)됨에 따라 대주 이자로 인해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자율은 4.5%, 6%로 종목별 상이함 (작성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이자율 확인 방법 : <https://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대출/신용 > 신용대주 >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1)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2)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요율 : 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예탁금이용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3)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영업일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가.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나.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https://www.shinhansec.com> 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매매수수료>주식오프라인 거래수수료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용거래용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1) 매도상환 : 신용용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2) 현금상환 :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나.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1)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2)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다.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라.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한 당일 상환됨

* 자기용자 오프라인 08:00 ~16:30, 온라인 05:00 ~ 23:00 / 유통용자(유통대주) 05:00 ~16:30

마.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가.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나. (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증가(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당일 증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증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당일 증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담보가치 할인평가 적용표

구분	담보 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주식	KOSPI 200 구성종목	당일 종가의 88% 이상
	기타 상장주식 (단, 매매거래정지 종목은 제외)	당일 종가의 68% 이상
증권예탁증권	상장종목	당일 종가의 68% 이상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시가의 98% 이상
	금융채	시가의 93% 이상
	회사채	시가의 88% 이상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당일 종가의 88% 이상
	기타	당일 기준가격의 70% 이상

라.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 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 담보증권 → ③ 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체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마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을 통해 반대매매 처리 합니다.

-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 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마.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담보부족** :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가격은 종목등급별 차등 적용

- A/B/C 등급 기준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
- D/E/Z 등급 기준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 종목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당일에 한해 반대매매 수량산정은 변경 전 등급으로 적용됨

▷ **반대매매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div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부담보평가금액**

$$\div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차금은 별도 고려 필요

* 신용상환금액 100원미만 절사로 인한 오차 (분모에 매도가격 * X와 오차)

바.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채무 총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 처분제비용 → ② 연체이자 → ③ 이자 → ④ 채무원금 순으로 총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1)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2.90%로 구성되며 '고객약정금리+2.90%'가 연 9.50%를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50%로 정합니다. 고객약정금리는 연체발생 시점(이자인출일)에 적용받는 고객 적용금리입니다.
- 2)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용자금 / 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 대주 수량의 신용대주 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1)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용자 · 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

구분	만기	연장
신용거래용자	120일	만기 연장 가능, 60일 단위 신용거래 가능종목인 경우 지속 연장 가능
신용거래대주	90일	연장조건 충족 시 90일 단위 연장가능 (최대 3회 연장가능. 단,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360일로 제한)

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1)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3)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대주 만기 연장 신청은 만기 D-4영업일부터 D-2영업일 08:20~18:00 까지 가능합니다.

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도 하락 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현금징수형(보증금률 45%),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82%(=1,000÷55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만원)을 상회**하게 됨

거래일	매매	원금	신용금액	평가금액	담보비율	고객손실액	비고
T	A 종목 1000만원 신용 매수시	450만원	550만원	1000만원	182%	-	
T	매수일 당일 하한가 시	450만원	550만원	700만원	127%	300만원	매수일 당일 담보부족발생
T+1	매수 익일 연속 하한가 시	450만원	550만원	490만원	89%	510만원	손실액 투자원금 상회

<사례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한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가.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1)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2)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 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3)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합니다.

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 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참여·소통>공매도포지션 보고 및 공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마.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1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1)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2) 청약철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당사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 (1588-0365)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금전 및 이자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일반금융소비자 기준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비교

ㄱ. 일반금융소비자 기준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비교

구 분	대출		신용	
	청약철회	중도상환	청약철회	중도상환
인지세 등 대출관련비용 반환	O	X	X	X
중도상환수수료*	X	X	X	X
신용정보기관 대출기록 삭제	O	X	-	-
약정 해지 (서비스 등록 해지)	O	X	O	X

ㄴ. 금융소비자 관점 14일 이내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 상환
금융 소비자 관점	유리	대출기록삭제	부대반환비용 없음
	불리	- 인지세관련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고객이 금융회사로 반환해야 함. - 단 신용의 경우 인지세가 없으므로 반환금액 없음	대출기록 미삭제

㉔.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 상환
비용관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없음
	인지세 등	- 인지세관련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고객이 금융회사로 반환해야 함. - 단 신용의 경우 인지세가 없으므로 반환금액 없음	없음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㉕.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예시

(약정종류, 한도) 신용 약정한도 20억원 (신용금액, 금리, 기간) A종목 1,000만원, 7.5%, 7일 (부대비용) 없음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고
비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없음	-
	반환부대비용	없음	없음	
	총 비용	없음	없음	동일효과
신용평가	대출실행기록	삭제	미삭제	

⇒ 비용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동일

(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㉖. 비교

◆ 대상 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행사 기한 : 대출(신용)서비스 등록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ex) 9월 1일 대출(신용)서비스 등록시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단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까지 순연)

◆ 행사 방법 : 대출성 상품의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등 관련비용을 모두 반환

◆ 의사 표시 방법 : 영업점 내점 또는 전화 신청(신청서 작성 필요)

※ 신용거래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신용정보기관에 대출기록을 보고하지 않음

※ 중도상환의 경우, 별도의 약정 해지(서비스 등록 해지) 필요 함

5)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㉗.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 상환 수수료에는 실제 발생 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ㄴ.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ㄷ.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2)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3)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납부 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

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용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담보활용으로 발생된 대여소득(담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2%)가 부과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 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5) 유통금융매수증권의 매수청구 신청 시 자동현금상환 처리되며 예수금 부족 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 표시한 유통금융자 수량을 현금상환 하시는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6) 유통금융자 매수 이후 주권교체권리(합병, 감자, 분할, 병합 등)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기준일 익 영업일 부터 교부일 전 영업일까지)금융자상환이 불가합니다.

다.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 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0% 이상인 경우

라.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의거

- 1)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이 발생 가능한 금융거래 종류 : 신용거래,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금융권역)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적인 신용공여 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5)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상환

- 1)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의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2)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한 당일 상환됩니다.
- 3) 신용대주 매수상환 시 예수금 부족으로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주 상환방법

- 매수상환 :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을 계좌로 입고하여 상환

■ 상환시간

-현금(현물)상환 : 자기용자 오프라인 08:00 ~16:30, 온라인 05:00 ~ 23:00

유통용자(유통대주) 05:00 ~16:30

- 4)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한국거래소 장개시 동시호가에 한국거래소에서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담보증권 반대매매 순서
 - ㄱ. 유통/자기용자 > 유통/자기대주 > 담보대출
 - ㄴ. 국내주식 > 해외주식 > 그 외 증권
 - ㄷ. 대출일 빠른 순 > 종목코드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
-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 : 한국 > 일본 > 중국(상해, 심천, 홍콩) > 미국

고객의 자산을 임의 처분할 경우 처분관련 비용, 연체이자, 담보대출이자, 담보대출원금의 순서로 사용됩니다.

-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 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7) 신용거래용자(유통, 자기) 종목에 대하여 주권교체권리(합병, 감자, 분할, 병합 등) 발생 시, 배정수량이 1주 미만인 경우 (단수주), 본 주에 대해선 비율에 맞춰 신용금액이 결정되며 단수주는 자동으로 임의상환 처리되어 미수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바.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1등급(매우높은위험) 거래이며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 용자 시 투자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신용보증금률 유형중 [혼합징수형]을 선택하여 현금보증금률 22.5%, 대용보증금률 22.5%인 사례입니다.
현금225만원과 대용 225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58%(= 1,225÷775×100)입니다.

(1,000주, 매입단가 1만원, 전일 증가 7,700원, 상한가 10,000 가정)

당일 상한가(10,000원)에 매입하여 하한가(5,390원)에 마치면 담보비율은 99%

(=764÷775*100)로 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용 변경 없다고 가정)

2) 신용거래 대주 시 투자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능 빠른 날)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으로 취득할 경우(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일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황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6) **호가가격제한은**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용자담보 주식이나 대주 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 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체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공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참고] CD 수익률 설명서

본 자료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기준일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산출된 가격이므로 실제 거래 체결 시 거래 조건 및 가격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D 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 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 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이며, 그 작성, 설명 및 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의무는 해당 CD 수익률 사용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CD 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27)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근거 :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제12조1항 및 감독규정 제13조)

II.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Ⅲ.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Level 1 (표준만기*3개월 발행물 금리)**: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3 (전문가적 판단)**: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융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에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 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요구
CD수익률 산출 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 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IV.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

1.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 (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 CD수익률 산출방법·절차상의 중요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적격거래 ②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③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④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⑤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⑥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②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VI.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
- ②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산출업무를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②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③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④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⑤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⑥ 산출업무의 he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및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사용 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 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① 자본시장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가 공시하는 3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의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 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② 직전 영업일의 기준 CD 금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조 외의 사유로 (①의) 산출 중단 시에 한함
③ 기타 대체금리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금리 (①, ② 산출 중단시) 예) COFIX, CP(A1, 91 일), KORIBOR, KOFR 등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

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설명의무이행 확인

본 신용거래설명서 및 CD수익률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고객에게 교부한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CD수익률 설명서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직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CD수익률 산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대체금리는 본 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한투자증권 _____ 지점(센터) ☎ : _____

직위 : _____ 직원명 : _____(서명)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